

수원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60210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1. A조합

2. B조합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강수현

피 고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2024. 11. 19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는 39,00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,
가. 원고 A조합에게 771,038,780원 및 그중 568,358,080원에 대하여 2024. 5. 31.부터 2024. 7. 26.까지는 연 10.1%의, 174,052,800원에 대하여 2024. 5. 31.부터 2024. 7. 26.까지는 연 10.44%의,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나. 원고 B조합에게 836,054,452원 및 그중 804,510,720원에 대하여 2024. 5. 31.부터 2024. 7. 26.까지는 연 10.1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단 채권자는 원고, 채무자는 피고이다)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. 피고는 이 사건에서의 지급명령에 대해 형식적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 청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).

판사 양상익

별지